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8045호)	김소희의원	2025.2.11.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 8. 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 회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8329호)	박정의원	2025.2.21.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 8. 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 회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12272호)	박지혜의원	2025.8.2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9. 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12376호)	이소영의원	2025.8.2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9. 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박지혜의원	2025.8.2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심사소

일부개정법률안(제2212440호)			위원회 직접 회부(2025. 9. 11.)
--------------------	--	--	-------------------------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 (2025. 9. 18.)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2025. 9. 23.)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주된 전제로 설계되어,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과 급변하는 탄소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최근 배출권 시장에서는 배출량 감소 기업에 대한 무상할당, 단기적 투기·시세조작 가능성, 중개회사 파산 시 투자자 예탁금 보호 미흡, 검증기관·협회 관리 부실 등 제도적 취약점이 지적되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음.

이에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력을 높이며,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 간소화를 하는 한편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강력한 벌

칙을 도입하고,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보호·정보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주무관청이 배출권 거래소까지 직접 검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검증기관·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확대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하는 실효적 감축수단이자, 공정하고 안전한 저탄소 시장체도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을 총 무상할당비율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할당계획 수립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설정하고, 이행연도·부문·업종별 비율을 규정하며, 직전 계획기간에서 이월된 배출권을 예비분 설정시 고려하도록 하고,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 및 제8조)

다. 배출권 시세를 변동·고정시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거래계정 등록 거절사유 신설,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의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중개회사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에게 예탁금을 우선지급하는 절차와 배

출권거래중개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제20조, 제22조의3 및 제41조)

라. 환경부 장관이 배출권거래소를 직접 검사·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하여 거래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함(안 제22조의4)

마.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등을 시장안정화 조치로 추가함(안 제23조)

바. 검증기관, 검증심사원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기간 중 검증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정관 변경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온실가스 검증협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사. 외부사업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 범위를 파리협정 국내 발효일 이후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하고, 외부 감축사업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과징금의 금액 상한을 삭제하여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 시 과징금도 함께 강화되어 기업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하

여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함(안 제33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본법 제8조”를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총 무상할당비율”이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국내외”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할당계획을 지체없이 변경하여야 하며, 국내외”로 한다.

7. 제12조제3항 및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따른 이행연도별·부문별·업종별 배출권 유상할당 목표비율 및 총 무상할당비

을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직전 계획기간에서 제출되지 아니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라 차기 계획기간으로 이월되었거나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의 수량을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 설정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3.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할당대상업체의”를 “할당대상(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할당대상업체”를 “할당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유상 또는 무상으로”를 “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당대상업체에는”을 “할당대상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업체”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업체”를 “경우”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를 “가동중지·정지·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으로”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배출권 추가 할당”을 “활동”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누구든지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거래를 위탁한 시장 참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배출권을 배출권등록부에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거래계정의 명의와 관계없이 위탁자가 거래계정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 이외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단기간에 해당 시장 참여자의 보유량이 크게 증가하여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되거나 불건전한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정 등록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배출권 거래소”를 “배출권 거래소(이하 “배출권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의3제6항제6호 중 “증권금융회사”를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로 하고, 제22조의3제6항제7호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4항 및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3항까

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배출권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⑨ 누구든지 제6항제6호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상계(相計)·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 하지 못하며, 해당 예탁금을 예치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고시한 경우 외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증권금융회사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된 예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시장 참여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해산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투자 매매업 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의 전부 양도 또는 전부 폐지의 승인 또는 전부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시장 참여자 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시장 참여자 정보의 분리 보관
4. 시장 참여자 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시장 참여자 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시장 참여자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⑫ 환경부장관, 증권금융회사,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0항에 따른 예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⑬ 제10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예탁금을 시장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 지급채무와 위탁자에 대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예탁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4제1항 중 “참여자가”를 “참여자와 배출권 거래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참여자에게”를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 참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및 거래에 관하여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를 검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를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및 배출권 거래소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참여자에”를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로 한다.

④ 주무관청은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를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로, “비율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단

기간에”를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로, “증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변화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00분의 25까지의 추가 할당”을 “활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의 조정

제24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2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격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24조의4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협회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파리협정」의 국내 발효 일인 2016년 12월 3일 이후에 시작한 사업 중”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서”를 “것으로서”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를 “1톤당”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또는 검증심사원”을 “, 검증심사원 또는 외부사업 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배출권의 거래 등과 관련하여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상한 규정 삭제 관련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과징금 부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배출권”이란 <u>기본법 제8조</u> 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3. ----- <u>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u> ----- ----- ----- ----- ----- ----- -----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7. “총 무상할당비율”이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 6. (생략)

7. 제12조제3항 및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따른 이행연도별 배출권 유상할당 목표비율에 관한 사항

7의2. (생략)

8.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9. ~ 11. (생략)

② (생략)

<신설>

수립 등) ① -----

-----.

1. 국가비전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2. ~ 6. (현행과 같음)

7. 제12조제3항 및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따른 이행연도별·부문별·업종별 배출권 유상할당 목표비율 및 총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사항

7의2. (현행과 같음)

<삭제>

9.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직전 계획기간에서

③ 정부는 계획기간 중에 국내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할당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⑤ (생략)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생략)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출되지 아니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라 차기 계획기간으로 이월되었거나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의 수량을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 설정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할당계획을 지체없이 변경하여야 하며, 국내외-----

-----.

⑤·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생략) <u><신설></u>	1. · 2. (현행과 같음) 3. <u>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u>
3. (생략) ② ~ ④ (생략)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생략) 2. <u>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u> 3. (생략) 4. <u>할당대상업체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현행과 같음) 4. <u>할당대상(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u>----- ----- 5. <u>할당대상</u>----- ----- 6. ~ 8. (현행과 같음) ③ ----- ----<u>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u>----
5. <u>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u> 6. ~ 8.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u>유상 또는 무상으로</u>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에서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 할당비율”이라 한다)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여건,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무상할당 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 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략)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

-----.

④ (현행과 같음)

⑤ -----

-----할당대상에는-----

-----.

1. -----
-----탄소집약도-----

업종에 속하는 업체

2.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
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

제1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①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
12조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
기 전에 제24조의2제1항에 따
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의 검증
을 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조기감축실적”이라 한다)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배
출권 할당 시 해당 할당대상업
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기감축실적
을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하거
나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경
우에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의 효과적인 달성과 배출권 거
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
여 할당계획에 반영되거나 추
가 할당되는 배출권의 비율을

-----경우

2. -----

-----경

우

<삭 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배출권 수량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2. (생략)

3.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4.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18조(배출권 예비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 수량의 배출권을 배출권 예비분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권 예비분은 그 용도나 목

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

1.2. (현행과 같음)

3. ----- 가동중지·정지·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으로-----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배출권 예비분) -----

-----.

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다. 1.2. (생 략) 3.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u>배출권 추가 할당</u> 4.5. (생 략) 제19조(배출권의 거래) ① · ② (생 략) <u><신 설></u>	----- -----. 1.2. (현행과 같음) 3. ----- -----<u>활동</u> 4.5. (현행과 같음) 제19조(배출권의 거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누구든지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0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① ----- ----- ----- -----<u>. 다만,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거래를 위탁한 시장 참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배출권을</u>
--	---

② · ③ (생략)

<신설>

제22조(배출권 거래소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받은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정하여 거래소 개시일 전까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배출권등록부에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거래계정의 명의와 관계없이 위탁자가 거래계정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 이외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단기간에 해당 시장 참여자의 보유량이 크게 증가하여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되거나 불건전한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정 등록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22조(배출권 거래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배출권 거래소(이하 “배출권 거래소”라 한다)-----

-----.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7. (생략)

③ ~ ⑧ (생략)

제22조의3(배출권거래중개회사)

① ~ ⑤ (생략)

⑥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할 것

7.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1. ~ 7.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배출권거래중개회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5. (현행과 같음)

6. -----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7. -----

가. ~ 라. (생 략)
<신 설>

마. (생 략)
⑦ · ⑧ (생 략)
<신 설>

<신 설>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배출권 및 배출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
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할 목
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
위

바. (현행 마목과 같음)
⑦ · ⑧ (현행과 같음)
⑨ 누구든지 제6항제6호에 따
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시
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상계(相
計)·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
하지 못하며, 해당 예탁금을 예
치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환
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고시한 경우 외에는 증권금융
회사에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증권금융회사는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된

<신 설>

예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시장 참여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해산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투자매매업 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의 전부 양도 또는 전부 폐지의 승인 또는 전부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

<신 설>

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시장 참여자 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시장 참여자 정보의 분리 보관
4. 시장 참여자 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시장 참여자 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시장 참여자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⑫ 환경부장관, 증권금융회사,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0항에 따른 예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⑨· ⑩ (생 략)

제22조의4(감독·검사)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 참여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 또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참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시장 참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⑬ 제10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예탁금을 시장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 지급채무와 위탁자에 대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예탁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⑭· ⑮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

제22조의4(감독·검사) ① -----

-----참여자와
배출권 거래소가-----

-----.

② -----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
게-----

-----.

③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금융감독원의 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조사와 관련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

이 법에 따른 업무 및 거래에 관하여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를 검사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및 배출권 거래소의-----
-----.

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

-----.

제23조(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① -----

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2.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100분의 25까지의 추가 할당

2. (생략)

<신설>

-----.

1. -----가격의 안정적 형성
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 경우

2. -----
-----해당 이행연
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변화하는-----

3. (현행과 같음)

② -----

-----.

1. -----
-----활용

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상할

3. (생 략) 제24조의2(검증기관) ① ~ ④ (생 략) ⑤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5. (생 략) ⑥ ~ ⑧ (생 략) 제24조의3(검증심사원) ① ~ ③ (생 략) ④ 주무관청은 검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u>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u>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24조의2(검증기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제4호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u> <u>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u> <u>무를 수행한 경우</u>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검증심사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여 정지할 수 있다. 다만, <u>제1호 또는 제2호</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u><신 설></u>	-----<u>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u>----- -----. 1.2. (현행과 같음) 3. <u>자격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u> 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4(온실가스검증협회)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24조의4(온실가스검증협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3항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⑤ <u>주무관청은 협회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u>
<u>④ ~ ⑥</u> (생 략)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① 제29조에 따라	<u>⑥ ~ ⑧</u>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① -----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증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1.2. (생략)

② · ③ (생략)

제33조(과징금)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2. (생략)

② · ③ (생략)

제37조(실태조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처분 등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배출

「파리협정」의 국내 발효일인 2016년 12월 3일 이후에 시작한 사업 중

것으로서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과징금) ①

1톤당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실태조사)

권 거래소, 시장조성자, 배출권
거래중개회사,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 대상자”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
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생략)

2.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의 인정

3. ~ 7. (생략)

제41조(벌칙) <신설>

-----, 검증심사원 또는 외부사업 사업자---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7.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① 배출권의 거래
등과 관련하여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
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
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

① ~ ③ (생략)	<u>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u>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	--